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1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등(안호영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3

I. 개요

1.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1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 24.
- (3) 회 부 일 : 2025. 1.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등(안호영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조인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9조의6)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 ※'24년 세법개정 - 감면요건 5년→ 3년으로 완화 -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 ○ 감면내용: 기업의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별 감면 - (청 년) 중소기업 근로자: 90% 중견기업 근로자: 50% - (그 외)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24년 세법개정 - 적용기한 : 2024.12.31. → 2027.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u>3년</u> 이상 납입한 근로자 (문진석의원안) ※ 해당 기업이 폐업·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세액감면 (천하람의원안)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문진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안호영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2034년 12월 31일(조인철의원안)

* 안호영의원안 2024. 11. 20. 제출(의안번호 5746), 한정애의원안 2024. 11. 26. 제출(의안번호 5873), 조인철의원안 2024. 12. 3. 제출(의안번호 6184), 문진석의원안 2024. 12. 11. 제출(의안번호 6379), 천하람의원안 2025. 1. 24. 제출(의안번호 7815).

□ 개정안은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¹⁾, ②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안호영의원안 및 한정애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인철의원안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천하람 의원안은 폐업·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²⁾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1) 다만 문진석의원안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도록 한 의안 제출 당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해당 의안이 발의된 이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고,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개정안의 제안 취지가 기 달성되었음.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제’³⁾의 유형 중 하나로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에 최초 도입되었음.

현행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5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통상 ‘내일채움공제’라 불림)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공제금 중 근로자가 납부했던 납입금과 기업의 기여금을 제외한 부분은 14%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⁴⁾, 기업의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⁵⁾ 기존의 월급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세율 6%~45%)되어 때로는 당초 적립금액보다 실수령이 작게 되는 등 공제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일부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임.

동 제도가 도입될 2014년 당시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재직자 중 해당 기업의 대표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하 “핵심인력”)이 해당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 1:2 이상⁶⁾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

3)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으로 정한 성과공유 유형(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출처: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2023. 1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6)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

한 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우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공제금과 이자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청년과 기업, 정부가 최소 월 12만원 : 월20만원 : 월30만원의 비율로 5년간(정부는 3년간) 공제금을 적립한 후 그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액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가 추가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었고,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운영되었음. 한편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도록 한 규정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최소공제 납입기간을 단축시킨 바 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유형]

구분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대상	근로자	핵심인력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요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지정한 인력	청년(만15세~34세)	
가입기간		3년	5년	3년
납입비율		1 : 2 이상 (근로자:기업)	월12만원 : 월20만원 : 정액 7회 (근로자:기업: 정부)	월16.7만원 : 월16.7만원 : 정액 6회 (근로자:기업: 정부)
적립금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운영기간		2014년 8월~	2018~2022년	2023년(한시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2023년도 감면세액은 38억원이며, 2025년 1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⁷⁾]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망)	2025 (전 망)
조세지출	-	8	29	31	38	157	170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7) 동 특례의 경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공제금 수령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세지출도 없었음.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안호영의원안, 한정
애의원안, 조인철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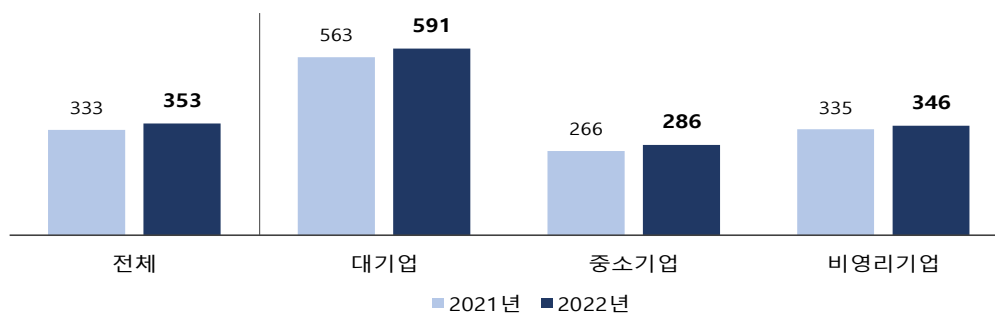
□ 개정안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의 지원을 연장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균소득은 대기업 591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중소기업 7.2%로 대기업 4.9%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⁸⁾.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8)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통계청). 2024. 2.27.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종업원 수 1~4인 기업의 경우 2,471천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6,071천원으로, 종업원 수 1~4인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간 1인당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3,600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2,763천원과 비교시 증가한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 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차이 (B-A)
2013년	1,684	2,219	2,625	3,007	3,381	4,447	2,763
2023년	2,471	3,241	3,728	4,073	4,610	6,071	3,6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 8

둘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 공제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어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⁹⁾,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1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8.0개월) 대비 2.9배 오래 재직하였고,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8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9.2개월) 대비 2.74배 오래 재직

9)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평균재직기간]

(단위: 개월)

청년재직자					핵심인력				
공제가입자			미가 입자 (B)	장기 재직 효과 (A/B)	공제가입자			미가 입자 (B)	장기 재직 효과 (A/B)
전체 (A)	유지	해지			전체 (A)	유지	해지		
52.1	55.4	42.6	18.0	29.0	52.8	56.6	47.4	19.2	2.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동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으로의 취업유도 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¹⁰⁾,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의 연차별 해지율을 살펴보면 가입 초반인 1년차(12.1%) 및 2년차(11.5%)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2년 또는 7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10)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 있음.

- 또한 개정안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은 2024년 말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되었으므로,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기업 귀책으로 필수 납입기간 미충족 시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천하람의원안)

□ 개정안은 귀책과 귀속과 무관하게 3년이 도래하기 전 공제가입을
해지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해고, 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특례
의 부당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3년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경
우에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
한법」 제29조의6제1항¹¹⁾이 개정되어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
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
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
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
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
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